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시행규칙

제정 2005. 10. 5 규칙 제485호
개정 2008. 6. 13 규칙 제561호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가로수의 부분별 명칭) 가로수의 각 부분별 명칭은 별표 1과 같다.

제3조(수종선정)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이하 “조례”라 한다) 제5조제1항제5호에서 “기타 특정 목적에 적합한 수종”이라 함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수종을 말한다.

1. 보도폭, 지장물 유무 등 가로여건에 적합한 수종
2. 관리청이 당해 사업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수종

제4조(식재 가로수의 크기) 식재할 가로수의 크기는 다음 각 호의 1과 같고, 흉고직경 및 근원직경 측정방법은 별표 1의 기준에 의하되, 수목의 특성상 10퍼센트의 규격오차를 인정할 수 있다.

1. 나무 크기는 나무높이 3.5미터 이상・흉고직경 10센티미터 이상(근원직경이 기준인 수목은 근원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을 원칙으로 하되, 수종이나 지역여건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2. 대형수목이 식재된 노선의 보식은 기존수목과 조화가 되도록 흉고직경 12센티미터 이상의 수목을 식재하여야 한다.

제5조(식재 가로수의 종류) 관리청은 특색있는 가로경관을 조성하기 위하여 수종을 다양화하고 지역 특성에 맞는 수종을 선정하여 식재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6조(식재방법) ① 가로수의 활착률을 높이기 위하여 분의 크기는 근원직경의 4배 이상으로 한다.

② 가로수를 식재하는 때에는 생육환경을 개선하기 위하여 부엽토, 퇴비

등 유기질이 함유된 토양을 넣은 후 식재하여야 한다.

제7조(가지치기 기준) 조례 제12조제1항 단서 규정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노선별, 구간별로 수관의 모양과 높이를 일정하게 유도하되 약전지위주로 실시하여야 한다.
2. 가로수와 도로시설물과의 상충을 피하기 위하여 가로수 지하고가 점차 높아지도록 유도하여야 한다.
3. 수형 조절을 위한 가지치기는 시행하지 않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수목의 지상부와 지하부의 균형 조절 등 불가피한 경우에는 전체 수형을 고려하여 시행하여야 한다.
4. 고압선, 교통표시판, 신호등, 건물 등에 닿는 가지는 닿는 부분만 자르고 수형을 다듬어 주어야 한다.

제8조(가지치기 대상) 가로수 가지치기 대상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병충해 피해 가지
2. 웃자란 가지 또는 쇠약한 가지
3. 마른가지(고사지)
4. 늘어지거나 가지끼리 교차되어 미관상 좋지 않은 가지
5. 뿌리 부분에서 새로 나온 키 큰나무(교목)의 움(맹아)
6. 지하부에 비하여 지상부가 지나치게 무성하여 풍해, 설해 등의 피해가 우려되는 경우
7. 가지가 도로표지·신호등과 같은 도로안전시설의 시계를 가리는 경우
8. 가지가 전기·통신시설물에 닿아 안전에 문제가 있는 경우

제9조(가지치기 시기) 가로수 가지치기작업 시기는 낙엽 후부터 이른 봄 새싹이 트기 전에 실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관리청이 인명·재산 피해 등 안전상 위해요인이 있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제10조(가지치기 방법) ① 가로수 가지치기작업은 수종별 고유 수형을 유지하여 자연스런 상태가 되도록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실시하여야 한다.

1. 침엽수는 눈 바로 윗쪽에서, 활엽수는 아래로 향한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2. 피해를 입은 가지는 살아 있는 끝부분에서 가지치기 한다.
3. 살아있는 가지는 나무의 전체적인 수형 및 피해부위를 감안하여 가지 기부 또는 중간부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4. 가지를 자를 때에는 별표 3 제1호의 방법에 의하여 지융부가 손상되지 아니하도록 한다.
5. 가지의 중간을 자를 때에는 발아 육성하고자 하는 눈 위에서 가지치기 한다.
6. 톱을 사용하여 절단면이 거칠어지지 아니하도록 가지치기 한다.
7. 굵은 가지를 자를 때에는 톱으로 먼저 가지 밑부분을 일정 깊이로 자른 후 상단부를 잘라 수간이 갈라지거나 나무껍질이 벗겨지는 피해를 입지 아니하도록 가지치기 한다.

② 가로수 가지치기의 수종별 기본 수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은행나무, 메타세콰이어, 칠엽수 등 수형이 원추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2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2. 버즘나무, 가중나무등 수형이 원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3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3. 느티나무, 회화나무, 단풍나무등 수형이 평정형인 가로수는 별표 3 제4호의 방법에 의하여 가지치기 한다.

제11조(가지치기 승인) ① 관리청이 아닌 자가 가로수 가지치기를 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조례 제12조제3항의 규정에 의하여 작업개시 1월 전까지 별지 제2호서식에 의한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를 관리청에 제출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제1항의 신청서를 접수받은 때에는 조례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기치기 조건 적합여부 및 신청수량의 적정여부 등을 조사·확인하여 승인함이 타당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별지 제3호서식의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을 받은 자는 제7조 각 호의 기준에 의하여 가지치기를 하여야 한다.

제12조(병해충 방제 및 거름주기) ① 조례 제13조의 규정에 의하여 관리청은 가로수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한 병해충 방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1. 병해충 발생의 우려가 있는 때에는 약제 등을 살포하여 피해를 사전에 예방하여야 한다.
2. 병해충이 발생하였을 때에는 즉시 방제작업을 실시하여야 하며, 피해가 심한 가지와 잎은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3. 알덩이·애벌레 또는 번데기는 약제를 살포하거나 채취하여 소각하여야 한다.

② 관리청은 가로수의 생장을 촉진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방법에 의하여 거름주기를 실시하여야 한다.

1. 거름주기는 가로수 식재후 3년까지는 매년 실시하며, 그 이후는 가로수 생육상태, 토양여건 등을 감안하여 관리청에서 조정할 수 있다.
2. 거름은 유기질비료(부엽토, 퇴비 등) 또는 고형복합비료를 사용한다.

제13조(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 등) 조례 제16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시설물은 별표 2의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에 의하여 설치·관리 및 개·보수한다.

제14조(공사구역안의 가로수 보호) 도로공사 또는 구조물공사 등을 시행하는 사업자는 공사구역안에 가로수가 있는 경우 관리청과 사전에 협의하여 가로수 존치에 필요한 보호조치를 강구하여야 한다.

제15조(원인자부담금) 관리청은 제14조의 규정에 의한 공사구역안의 가로수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이를 제거하고, 조례 별표 3 손궤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에 의한 원인자 부담금을 징수하여야 한다.〈개정 2008. 6. 13〉

1. 흉고직경 25센티미터 이상의 대경목·병해충피해목·노쇠목 등 이식후 활착이 어렵다고 판단되는 수목
2. 이식함으로써 나무모양이 많이 훼손되어 가로수로서의 가치를 상실할 우려가 있는 수목

제16조(하자보수보증금) ① 관리청은 가로수를 이식하는 자에게 가로수 이식 완료검수일까지 조례 별표 3 손궤자부담금·원인자부담금의 산정기준의 도급공사설계비에 상당하는 하자보수보증금을 납부하게 하고, 2년간 이를 보관하여야 한다. 다만, 용인시장이 시행하는 경우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의 납부를 면제할 수 있다. 〈개정 2008. 6. 13〉

② 제1항의 기간 동안 하자가 발생하지 아니한 때에는 하자보수보증금을 가로수를 이식한 자의 요청에 의하여 즉시 반환하여야 한다.

제17조(비상 재해시 조치) 관리청은 풍수해·설해 등의 재해로 인하여 가로수가 손상되는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조치하여야 한다.

1. 넘어질 우려가 있거나 타 시설물을 손상시킬 우려가 있는 가로수에 대하여 원상복구·지주대 보강 등의 조치를 하고, 활착 가능성이 없거나 피해를 많이 받았을 경우에는 제거한다.
2. 인명과 재산에 피해를 주거나 교통에 지장이 없도록 하고, 보험가입 등 적절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제18조(관리대장 비치 및 보고) ① 조례 제24조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대장은 별지 제4호서식 및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다.

② 조례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가로수 관리실적은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다.

부칙

①(시행일) 이 규칙은 일반구 및 행정동을 설치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칙 시행 이전 종전의 규칙에 의한 가로수 이식과 관련한 처분은 이 규칙에 의한 처분으로 본다.

부칙 〈2008. 6. 13 규칙 제561호〉

이 규칙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별표 1］

가로수 각 부분의 명칭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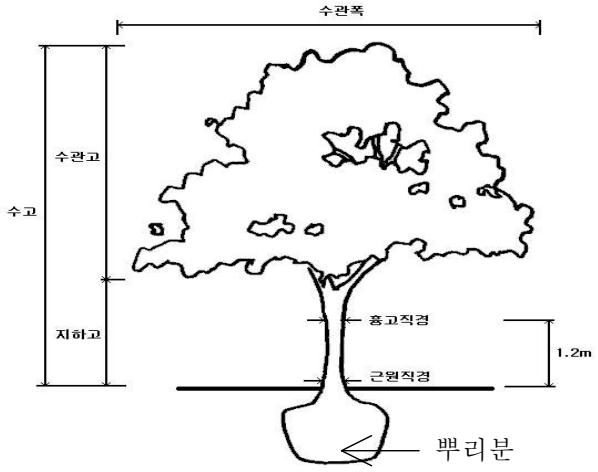

□ 수고(樹高) : 지표면에서 수관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말하며, 수관의 정상부에 돌출된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수관고(樹冠高) : 역지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의 가지에서 정상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지하고(枝下高) : 지표면에서 역지(力枝) 끝을 형성하는 최하단 가지까지의 수직거리를 원칙으로 하며, 능수형은 최하단의 가지 대신 역지의 분지된 부위를 채택한다.
□ 흉고직경(胸高直徑) : 지표면에서 1.2m 지점의 줄기의 직경을 말하며, 흉고직경 부위의 줄기가 2개 이상일 경우 각 줄기의 흉고직경 합의 70%가 당해 수목의 최대 흉고 직경 보다 클 때는 이를 채택하며, 작을 때는 최대 흉고직경으로 한다.
□ 근원직경(根元直徑) : 근원직경은 흉고직경을 측정할 수 없는 관목이나 흉고 이하에서 줄기가 분기하는 교목성 수종, 만경목, 어린묘목 등에 적용함을 원칙으로 하며, 지표면의 줄기의 굵기를 말한다.
□ 수관폭 : 타원형 수관은 최대층의 수관축을 중심으로 한 최단과 최장의 폭을 합하여 나눈 것을 수관폭으로 채택한다. 또한 조형한 교목이나 관목도 이에 준하며 웃자란 가지는 제외한다.
□ 분(뿌리분) : 나무의 뿌리 부분을 둘러싸고 있는 흙

［별표 2］

가로수 관리시설물 설치방법

1. 관리시설물과 가로수의 위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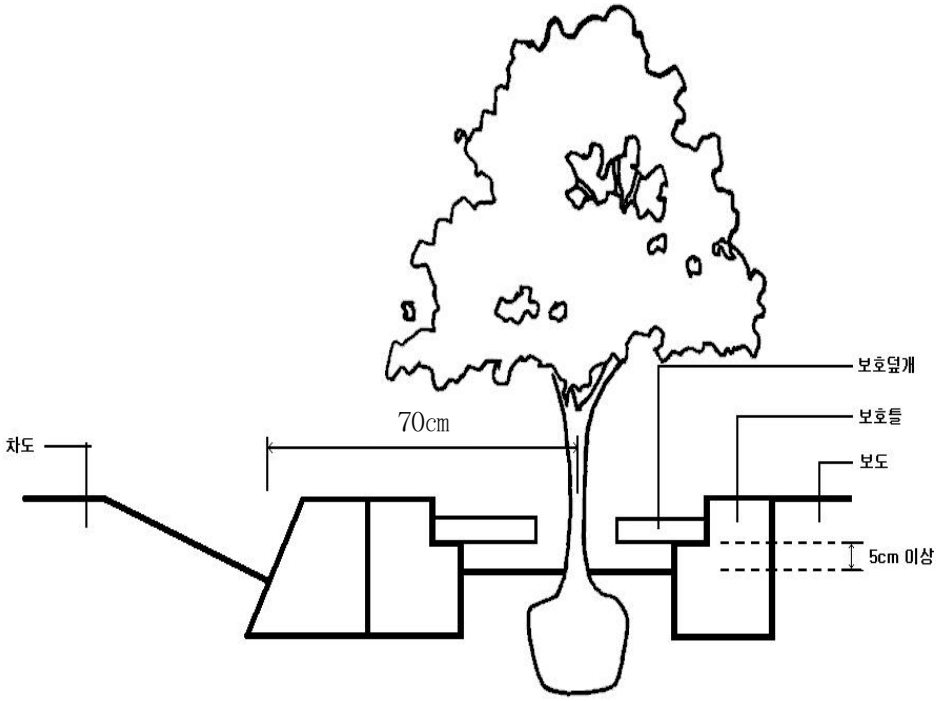

□ 가로수의 중심에서 보·차도 경계까지의 거리는 100cm 이상이어야 한다.

□ 보호덮개(철제 등 구조물)와 지면과의 높이 차이는 5cm 이상을 원칙으로 하나 차량이나 기타 인위적 피해가 우려되는 지역은 5cm 이하로 할 수 있다.

□ 보호틀과 보도의 높이를 같게하여 우수 등이 보호틀 내로 유입될 수 있도록 한다.

2. 보호틀, 보호덮개, 보호대, 통기・관수시설

가. 일반사항

<보호틀>

□ 보호틀은 도로의 여건에 따라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 부정형으로 한다.

□ 가로수의 원활한 생육공간 확보와 비포장면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하여 대상형, 직사각형, 정사각형의 순으로 설치하고, 부정형은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설치한다.

□ 대상형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많지 않거나 보도의 폭이 넓을 경우 설치한다. 대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을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조정할 수 있다.

□ 직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좁은 폭 1.5m 이상, 넓은 폭 3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 정사각형의 보호틀은 교통량・보행자가 아주 적거나 보도의 폭이 협소할 경우 설치한다. 정사각형 보호틀의 크기는 가로와 세로 각각 1.5m 이상으로 하되 도로의 여건과 가로수 수종에 따라 크기를 조정할 수 있다.

<보호덮개>

□ 보호덮개는 철제 등의 구조물 또는 나무파쇄물, 자갈 등으로 한다.

□ 철제 등의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를 사용하지 않고 나무파쇄물, 자갈을 채우거나 잔디, 초화류, 관목류 등을 심을 수 있으며 구조물로 된 보호덮개 하단에 잔디 등을 식재할 수 있다.

<보호대>

□ 보호대는 보행자나 차량에 의한 피해가 예상되는 횡단보도 주변 등의 가로수나 특별히 보호해야 할 가로수에 설치할 수 있다.

<통기・관수시설>

□ 통기・관수시설은 답압 등으로 인해 우수・관수 등이 땅속 깊숙이 침투하지 못하거나 통기성이 불량할 때 설치할 수 있다.

나. 대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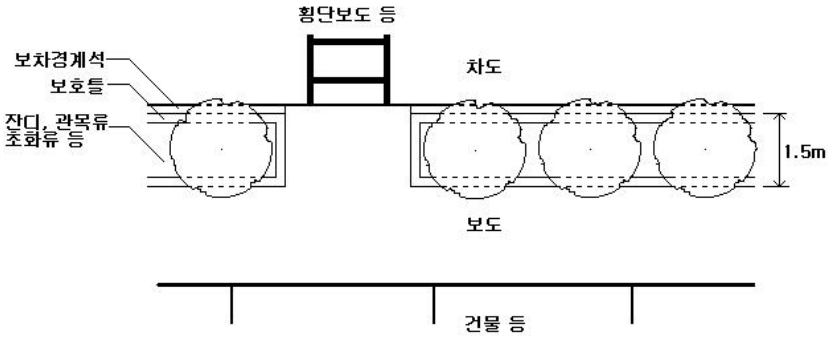

다. 직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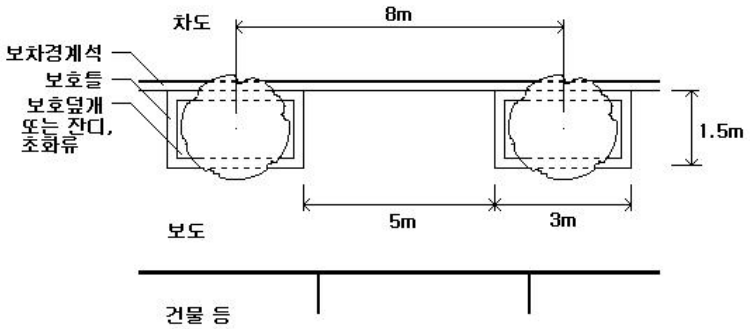

라. 정사각형 보호틀 및 보호덮개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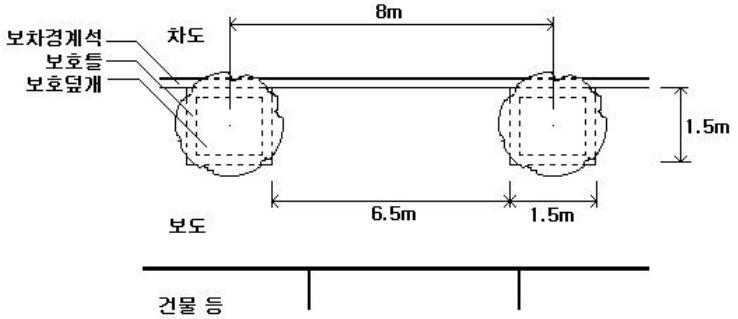

마. 보호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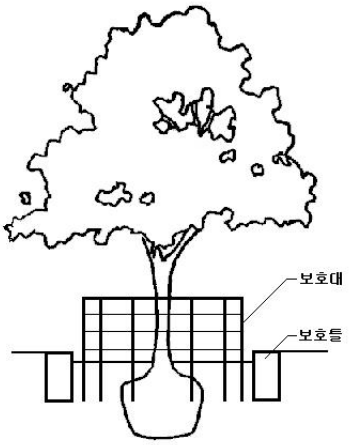

바. 통기·관수시설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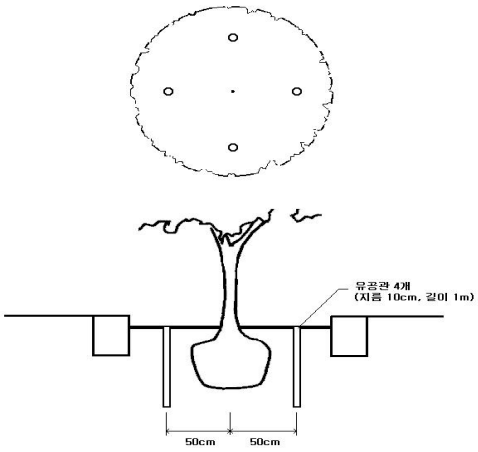

□ 가로수 중심으로부터 50cm 되는 곳에 지름 10cm 이상의 유공관을 4개 이상 설치하여 통기성을 개선하고 우수나 관수시 땅속 깊이 물이 스며들 수 있도록 1m 이상 깊이로 설치한다.

□ 유내부는 지름 2cm 가량의 쇄석으로 채운다.

3. 지주대의 설치

가. 지주대 설치의 일반사항

□ 지주대는 박피 통나무, 각목 또는 특별히 고안된 재료(각종 파이프, 와이어, 플라스틱)로 사용할 수 있다. 단, 지주용 목재는 내구성이 강한 것이나 방부처리(탄화, 도료, 약물주입)한 것으로 한다.

□ 수고 4.5m 이상의 가로수에는 지주목을 삼각형으로 세우거나 당김줄형 또는 연계형으로 설치한다.

□ 수고 4.5m 미만의 가로수는 이각형, 삼발이, 삼각형, 사각형을 설치한다.

□ 매몰형지주대는 수목식재가 경관상 매우 중요하고 보행자의 안전을 위해 지표에 지주대가 나타나지 않아야 할 때 사용한다.

□ 지주대와 수목을 결박하는 부위에는 완충재를 수간에 대어 가로수의 성장에 따른 수간의 손상을 방지하여야 한다.

□ 지주의 방향은 주풍 방향을 고려하여야 하며 경사지 등 지형적인 관계나 지반과의 관계도 고려하여야 한다.

□ 땅속에 지주대를 박을 때 선단부가 쪼개지거나 부서질 우려가 있는 경우 톱으로 그 부분을 잘라 보기 흉하지 않도록 해 놓는 동시에 내구성과 미관을 고려하여 지주대의 지상부에 페인트나 방부제를 발라 놓는다.

□ 가로수가 완전히 활착되어 더 이상 지주대의 필요가 없을 경우 생장에 따른 수간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지주대를 제거하여야 한다.

나. 이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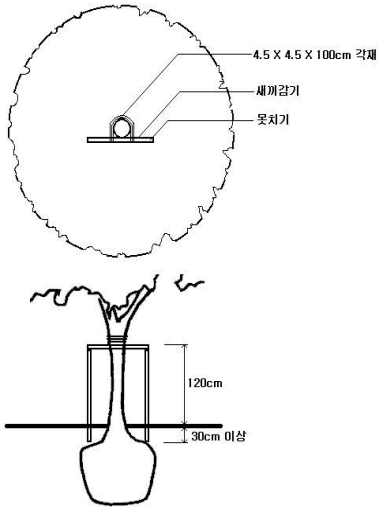

□ 수고가 2m 이하일 경우 적용하며 수목의 중심으로부터 양쪽으로 일정 간격을 벌려서 각목이나 말뚝을 깊이 30cm 정도로 박고, 박은 나무를 각목과 연결 못으로 고정시킨 다음 가로지르는 각목과 가로수의 주간을 새끼나 끈으로 묶는다.

다. 삼발이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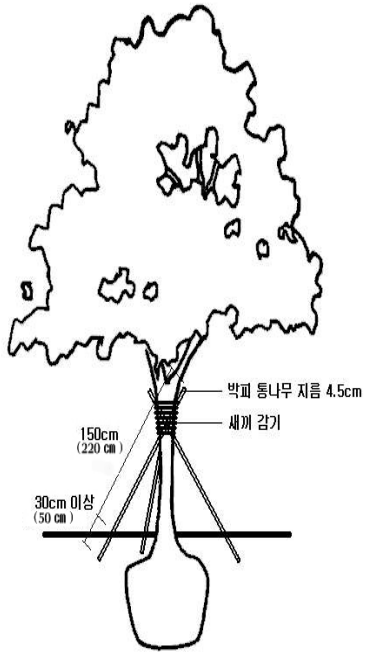

□ 삼발이 지주대(소형) : 일반적으로 수고 4.5m 미만의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 180cm 정도의 박피 통나무나 각재, 또는 플라스틱 등 기타 재료로 된 것을 사용하여 삼각형으로 걸쳐 주간을 안정시킨다.

□ 삼발이 지주대(대형) : 일반적으로 수고 4.5m 이상의 경우 적용하며 경관상 주요 지점이 아닌 곳에 설치한다. 길이는 270cm 정도의 지주대를 사용하고 약 50cm를 땅에 묻는다.

라. 삼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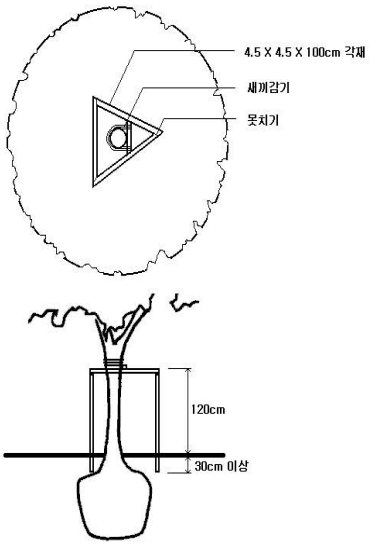

□ 삼각 지주대는 삼발이 지주대에 비해 소요되는 공간이 적어 보도의 폭이 좁을 경우에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마. 사각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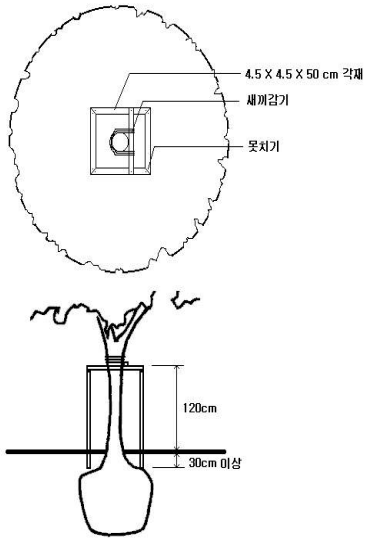

□ 삼각 지주목과 마찬가지로 보도의 폭이 좁을 때 사용한다.

□ 각재나 박피 통나무, 기타 재료를 이용하여 시가지 등 보행자의 통행이 빈번한 곳에 설치한다.

바. 매몰형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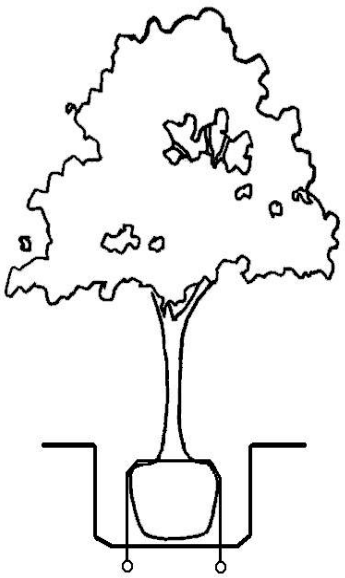

□ 가로수의 식재가 매우 중요한 위치일 경우, 또는 지주대가 통행에 지장이 많다고 판단되는 경우 이 방법을 사용한다.

사. 당김줄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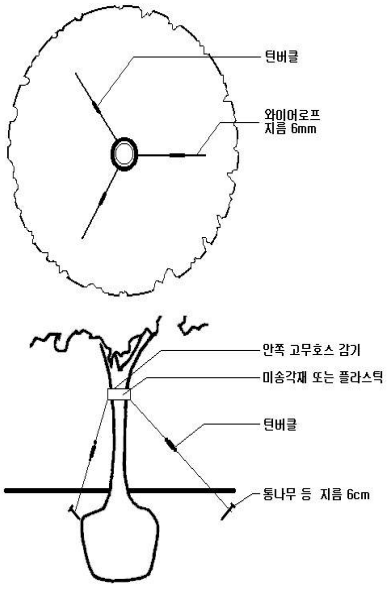

□ 일반적으로 대형 거목에 적용하며 특히 경관적 가치가 요구되는 곳에 설치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하고 그 부위에서 세 방향으로 철선을 당겨 지중에 박은 말뚝에 고정한다.

□ 안전사고를 방지하기 위해서 보행자가 알 수 있도록 와이어로프에 표식(끈, 리본 등)을 달아야 한다.

아. 연계형 지주대 설치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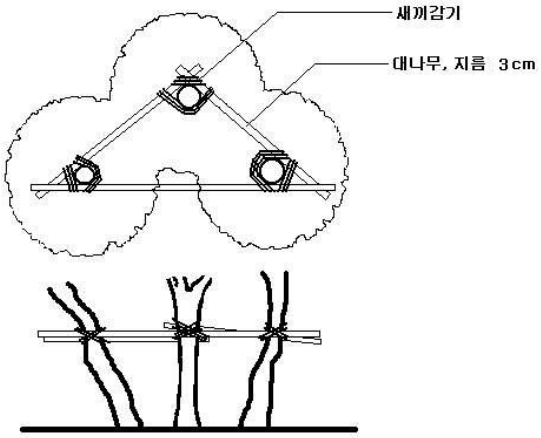

□ 군식을 할 경우 3~4개의 수목을 한꺼번에 안정시킬 경우에 사용한다. 수목의 주간에 완충재를 감아 수피를 보호한다.

［별표 3］

가지치기 방법

1. 가지치기 일반사항

① 지융부가 없을 때 줄기 가까이 가지치기

② 지융부가 있을 때 지융부 가까이 가지치기

③ 으뜸가지 이하에 있는 것만 가지치기

2. 은행나무 등 원추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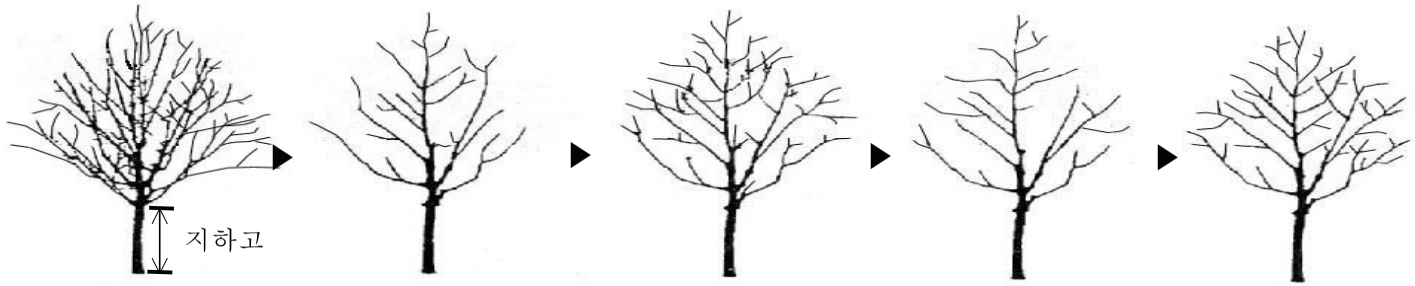

①원상태
'지하고' 설정

②약전지

③차년도
성장상태

④2차약전지

⑤차년도
성장상태

3. 버즘나무 등 원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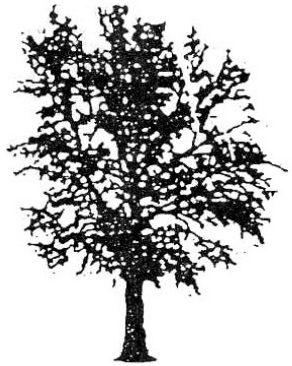

①원상태

②약전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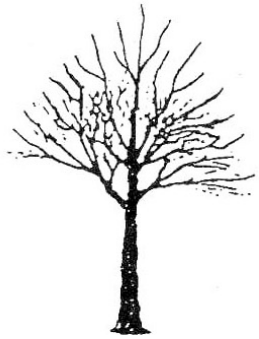

③성장상태

4. 느티나무 등 평정형 가로수 가지치기 방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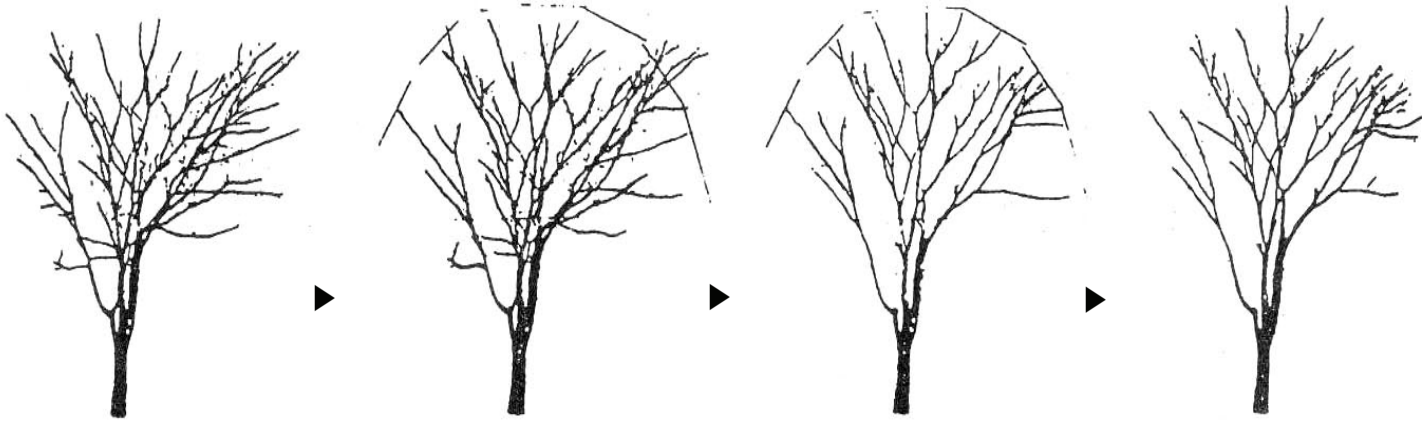

①원상태
'지하고' 설정

②수관폭 축소
범위설정

③솎음전지

④차년도
성장상태

［별지 제1호서식］

가로수 이식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이식 내역		수 종 명	수 량	
가로수이식 사유				
작 업 방 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 제2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5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구청장(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위 치 도 1부.
2. 현황도면 1부.
3. 현황사진
4. 도로점용허가 사본 1부.

［별지 제2호서식］

가로수 가지치기 신청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일간) 년 월 일까지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신청합니다.

년 월 일

신청인 (인)

○ ○ 구청장(사업소장) 귀하

구비서류 1. 위 치 도
2. 현황도면
3. 현황사진

［별지 제3호서식］

가로수 가지치기 승인서

신청인	성 명(명칭)		주민등록번호		
	주소(소재지)				
가지치기 내역	노선명	구 간	수 종	규 격	수 량
		시 점 종 점			
가지치기 사유					
작 업 방 법					
가지치기 유형 및 주 의 사 항					
작 업 기 간	년 월 일부터 년 월 일까지 (일간)				
승 인 조 건	※조례 제12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7조 내지 제10조의 규정과 기타 승인조건 기재				

「용인시 가로수 조성 및 관리 조례」제11조 및 동조례 시행규칙 제11조의 규정에 의하여 위와 같이 승인합니다.

년 월 일

○ ○ 구청장(사업소장) (인)

［별지 제4호서식］〈개정 2008. 6. 13〉

가로수 관리대장(노선별)

가로수 관리대장

도로노선명			구간	시점	
				종점	
도로종류	도로종류		도로폭	차도	
	좌우측			좌측보도	
	연장거리			우측보도	

가로수 조성 현황											
최초조성					준공일자						
사업비					시공자						
수종	식재 본수 (본)	평균 수고 (m)	흉고 직경 (㎝)	근원 직경 (㎝)	수관 폭 (㎝)	수령 (년)	식재 위치	식재 거리 (m)	식재 간격 (m)	식재 유형	보호틀 유 형

가로수 변동 및 관리현황(본)											
수종	일자	변동내용			관리내용						
		증감 수량	잔존 본수	증감 사유	계	가지 치기	방제	비료 주기	토양 개량	외과 수술	기타

가로수 관리시설 현황						
시설종류	일자	잔존수량	설치수량	제거수량	기타	비고

210㎜×297㎜(보존용지(2종) 70g/㎡)

［별지 제5호서식］

가로수 전산관리대장

1. 대상지 현황

1. 위 치			
2. 도 로 명		3. 블 럭	
4. 도로차선		4. 주변토지이용	
6. 전기(화)선		7. 지표상황	

(사 진)

2. 수목 데이터

8. 수 목 명			
9. 수 형		10. 수 령	
11. 수 고(m)		12. 흉고직경(㎝)	
13. 수관폭(m)		14. 활 력 도	

3. 관리 데이터

15. 등록번호		16. 등록일자		17. 관리등급	
18. 관리기관			19. 피해상황		
20. 관리현황	식 재 일				
	약제살포				
	전 정 일				
	시 비 일				
	기 타				
21. 관리방안					

최종작성일		작 성 자	

〔별지 제6호서식〕

가로수관리상황 보고(　　년)

가. 가로수 현황

(　　　구)

연번	시·구 도로 구분	노선명	노선폭 (m)	연장 (㎞)	전반기 수 량 (주)	증감		현존 수량 (주)	수 종 별 내 역																							비고
						증	감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콰	회화나무	가중나무	감나무	참나무	수양버들	목백합	칠엽수	포플러	느릅나무	살구나무	무궁화	소나무	목련	아까시	…	…	기타	결주 수량
계																																

나. 가로수 증감사유별 내역

구분 / 수종별	전반기 수량	증감		현존 수량	증감사유별내역													
					증가					감소								
		증	감		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기타	계	자연고사	인위피해	교통사고	지장목이식	수종갱신이식	수종갱신제거	기상피해	기타
계																		

다. 가로수 조성 내역

구분		식재거리(m)	수종별(본)														예산(백만원)					
			계	은행나무	버즘나무	느티나무	벚나무	단풍나무	메타세쿼	회화나무	목백합	기타수종					계	구비	시비	국비	기타	비고
												소계	( )	( )	기타							
합계	합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기타( )																					
시도	소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기타( )																					
구도	소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기타( )																					
기타도로	소계																					
	신규조성																					
	갱신																					
	보식																					
	기타( )																					